



2019 회원사CEO

업무보고

제 368호(2019. 12. 31 발행)

서울시 “희망온돌사업” 성금 전달



- 일 시 : 2019. 12. 31(화), 11:00
- 장 소 : 서울시청 공용회의실2
- 참 석 자 : 허승 회장 등 시회장단
- 내 용 : 성금 1,000만원 전달

CONTENTS

업무보고 [제 368호]

주요업무 및 업계애로 해소 추진 현황	02
각종 회의 개최	08
건설법령 개정 동향	12
기타사항	21
2019년 10 · 11 · 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31
건설업체 현황	32





「주요업무 및 업계애로 해소 추진 현황」

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및 정책 건의

■ 현황 및 추진경위

- 건설생산체계의 개편 및 중장기 미래건설환경 변화 등에 따른 신규 시장수요 분석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 발굴 필요성 제기
- 서울시의 경우 기존 생산체계 하에서의 원·하도급 거래 관행에 중점을 둔 시정을 지속 운영 중
 - ※ 2013년부터는 연간 단위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 중
-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 단위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이에, 서울지역 건설기업 지원 정책과제의 필요성 및 서울시 건설산업 정책 반영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 연구용역 개요

- 과업명 :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수요 발굴
- 용역기간 : '19. 2. 15 ~ 10. 15
- 용역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과업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I.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서울특별시 건설산업의 위상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 지역경제성장 기여도 등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생산, 고용 비중 등
서울지역 건설시장 규모	서울지역 건설시장 규모 서울지역 건설공사 발주 규모 서울지역 건설시장의 변화 추이 서울지역 발주 공사물량 변화 추이
서울지역 건설업체 현황	업종별 업체수 현황 및 변화 추이
서울지역 건설산업 고용 현황 및 변화 추이	업종별 고용현황 변화 추이
서울지역 건설업체 수주 현황	서울지역 본사소재 건설업체 수주 규모 서울소재 건설업체 수주 비중 추이
역내 공사 수주 비중 및 의존도	역내 공사 수주 비중 역내 공사 수주 의존도
II. 서울시 건설산업 정책제도 운용 · 실태 분석	
서울시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운용 현황	서울시 건설부문 조직 및 업무분장 분석 서울시 건설관련 조례 제정 현황 분석 서울시 주요 부문별(입 · 낙찰, 생산체계, 사업 및 시공관리 등) 건설 정책 · 제도 운용 현황 분석 → 개별제도별 구체적 연혁, 추진실적, 문제점
주요 광역지자체의 지역건설 활성화 정책 · 제도운용 동향 및 시사점	부산, 대전, 강원, 충남, 전북 등 각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 활성화 정책 사례조사
III. 미래 산업환경변화 방향 분석	
외부 산업환경 변화 방향 분석 및 신수요 발굴	최근 건설시장 동향 및 중장기 건설경기 전망 노동 및 산업 관련 정부경제정책 방향 분석 남북경협 및 해외시장 진출 관련 변화 방향
미래 건설산업 변화 방향 분석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변화 방향 해외 주요 건설산업 패러다임 변화 방향 분석
IV. 서울지역 건설산업 진단 및 정책수요 도출	
서울시 정책 만족도 조사 및 서울소재 건설기업의 미래 환경변화 대응역량 진단 (설문조사)	
서울지역 건설업체 정책 수요 도출	



V. 서울특별시 건설정책 추진 방향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

주요 정책별 개선소요 도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정책 제언

미래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신규 정책 제언

■ 연구결과 반영 건의

-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등 시 정책에 반영토록 건의('19.11.21)
- 서울시 산하기관 및 25개 구청 등 발주기관에 서울 지역 종합건설업계의 애로 및 개선 방향 등 적극 건의('19. 11. 21)

주요 건의처

- 서울시(건설혁신과, 시설안전과, 예산담당관, 재정균형담당관, 재무과, 계약심사과, 재생정책과, 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 서울시교육청(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 교육시설안전과)
- 25개 구청

■ 건의내용

- 안정적 물량 창출 유도 감시 강화
 - 안정적 사업물량 창출 확대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 및 이행 방안 마련, 서울형 인프라 성능 평가 보고서 개발 · 운용
 -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공사의 발주체제 정비를 통한 종합건설업 발주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유도 장치 마련 등
- 잘못된 발주 관행 개선을 통한 종합건설업 물량 확보



- 복합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 대상 발주 등 부적정 발주관행 원천 차단을 위해 주요 복합공종 공사에 대한 서울시 입찰 참가자격 판단 기준 수립
- 규제정책 일변도의 건설하도급 정책에 대한 변화 유도
 - 순건설사업 참여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로 서울시 건설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소외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정상화
 - 서울 소재 지역건설사업자 수주율 확대를 위한 정책(인센티브) 마련, 지역 공공발주기관 협의체 운영 및 합동설명회 개최 등
- 적정공사비 지급 문화 구축을 위한 선도적 시책 발굴
 - 서울형 품셈 상시 정비 체계 전환, 건설업계 참여 활성화 및 예정가격 산정시 간접비 제비율 선제적 합리화 정책 마련
 -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회피 개선 및 공기연장 발생 최소화를 위한 안정적 예산 편성 등
- 지역건설산업 관리행정의 고도화
 - 불필요한 행정처분 최소화 요구 등
- 스마트 건설사업의 선제적 추진
 - 서울형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 및 지원제도 발굴
 - 서울 소재 스마트 건설 관련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 향후계획

- 서울시 건설정책 개선현황 지속 모니터링
- 25개 구청 및 서울시 산하 발주기관 등의 정책 동향파악 및 추가 개선사항 발굴



나. SH-건설서울시회 실무자회의 개최

- 일 시 : '19. 12. 16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2층 회의실

■ 회의 결과

- SH공사 · 서울시회 · 건설업계 간 회의를 분기별 개최원칙으로 정례화
 - 업계 및 현장 의견 반영을 위해 회원사 추천을 통한 임원 · 현장소장 등이 참여한 ‘실무 포럼’ 구성
- 차기 회의 개최 일정(예정)
 - 일자 · 장소 : '20. 2월 중, 건설회관
 - 참 석 자
 - SH공사 : 본부장 및 처장 등
 - 건설업계 :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임원 및 현장소장 등 실무위원
 - 서울시회 : 정책부회장, 사무처장 및 건설정책실장 등
 - 회의내용
 - 협회 건의 내용에 대한 SH공사의 후속조치
 - 공동연구 사항 및 향후 추진사항 논의

다. 노무비 적기반영을 위한 ‘표준시장단가 공표시기’ 개선 건의

- 건의처 : 서울특별시장(기술심사담당관)
- 건의일자 : '19. 10. 14

■ 추진경위

- 국토부는 시중노임단가 등 건설분야 물가변동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적용시기에 대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19.10.1)
→이에, 우리사회는 서울시에 건설 노무비 적기 반영을 위한 의견 제시 건의 ('19.10.14)
- 현재, 1월에 공표된 노무비가 7월에 반영되어 6개월의 시차로 인한 노무비 적기 반영 불가
→공표된 노무비가 동일한 기준으로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및 5월(시중노임단가 공표 후 각 4개월 이내)에 표준시장단가 공표 · 적용토록 개선

■ 추진결과

-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개정 · 공표시기를 조정하여 매년 1월, 5월에 공표 · 적용('20.1.2)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 적기반영

라.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통보 안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수급인 미기재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업체*에 억울하게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사항 통보

*해당업체 명단 협조 : 국토부, KISCON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 ① 건설산업정보센터(<http://www.kiscon.net>) 접속
- ② 주요서비스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바로가기' 클릭
- ③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건설업체로 로그인
- ④ 건설공사 대장관리 화면-'신규작성' 또는 '조회&변경통보'



위반혐의사항	건설업체가 조치할 사항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공사대장 신규 통보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미기재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 계약사항 입력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발급	보증서 발급시 발급정보 입력, 면제사유 해당시 증빙서류 첨부

• 월별 건설공사대장 확인 및 통보업체수 및 건수

구분	10월		11월		12월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업체수	건수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3	13	5	5	67	150
건설공사대장에 하수급인 미기재	32	77	44	69	27	4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미발급	37	52	38	55	31	41
합계(중복 제외)	74	142	78	129	119	240

「 각종 회의 개최 」

가. 11월 대의원 정책간담회

- 일 시 : '19. 11. 5~6
- 장 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호텔
- 회의내용
 - －보고사항
 - 적정공사비 ·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도입 동향
 - －기타사항
 - 서울시 정책수요 발굴 연구용역 추진동향 및 기타 현안사항

－논의사항

- 국가계약법 개정 시행 후 낙찰률 상승효과 분석 및 낙찰률 상향방안 검토, 개정안 부대의견(100억 이상 확대) 반영 추진
- 건산법 개정 내용인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실효성 확보 위해서는 착공신고시 제출토록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 필요
- 하도급법령상 하도급별점경감제의 존치방안 검토 및 반영 필요

• 향후계획

- －법령 개정 동향 모니터링 및 연구용역 서울시 정책 반영 추진

나. 12월 대의원 정책간담회

- 일 시 : '19. 12. 16
- 장 소 : 그랜드 하얏트 호텔 남산2번룸
- 참석대상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대의원 25인
- 회의내용

－보고사항

- 건설산업 관련 주요법령 개정동향
- 간이종심제 도입 대응
- 건설산업 주52시간제 개선동향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 · 정책건의
- SH공사 MOU 및 간담회 후속조치
- 중소건설사업자의 철근 공동구매 관련 보고



- 논의사항
 -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 간이중심제의 낙찰율 제고 방안 모색 및 회원사에 대한 구체적 영향·대응 교육(안내) 요망
 - SH공사 발주공사의 불공정사례 지속 발굴 및 개선 추진 요망
 - 건설자재 공동구매, 협력업체 추천, 건설기술자 공동활용 등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 요망
 - 소방·전기·통신·기계설비 등 분리발주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공사 관리비’(가칭) 지급
- 향후계획
 - 논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향 파악 및 적극 추진

다. 송승환 예술총감독 초청 조찬강연회 개최



- 일 시 : '19. 12. 19, 07:30~09:00
- 장 소 :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호텔 7층 셀레나홀
- 참 석 자 : 회장 및 대표회원, 유관기관장·임원 등 200여 명

- 강의주제 : 4차산업혁명시대, 문화가 경쟁력이다.
- 강 연 자 : 송승환 (PMC프리덕션 예술총감독)

라. 제2차 간이종심제 회원사 실무교육 개최

• 일 시 : '19. 11. 25, 9:30~17:00(초급반)

'19. 11. 27, 9:30~17:00(중급반)

- 장 소 : 건설회관 1층 평생교육원
- 참 석 자 : 우리시회 회원사 임직원 88명
- 교육내용

구분	초급반 (개념파악판)	중급반 (내역작성 및 투찰반)
제도의 이해	• 간이종합심사 개요 • 분야별 점수평가 해설 • 간이종심제 용어 해설 및 수주대책	• 입찰 · 단가점수의 이해 • 부적정 입찰금액의 이해
실습	• 예정가격, 균형가격 산출 실습	• 원가계산, 내역서 작성 입찰금액 설정 실습





「건설법령 개정 동향」

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9.11.26)

- 원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시,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보증 혹은 담보 제공 의무화*.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11.27 부터 적용

나. 국가계약법 개정 · 공포('19.11.26)

■ 주요 개정내용

- 예정가격 작성근거 법률 상향 및 계약목적물의 품질 ·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금액 반영의무 신설

※'20.5.27 부터 적용

-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등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제외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세}

※'20.5.27 입찰공고부터 적용

- 부당특약(조건) 금지 및 효력 무효화

※'20.5.27 부터 적용

- 부당특약 관련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 추가

※'20.5.27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계약기간 연장 등)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

※'20.2.27 부터 적용

다.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 개정 · 공포('19.12.18)

1)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주요 개정내용

Ⅰ 간이형 중심제 시행방안 마련(100~300억원 공사)

- 시공실적 심사
 -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 준공된 시공실적 기준
-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 －‘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까지 재직시 평가점수 100% 부여
 - －(시공 · 안전 · 품질 등 분야별 책임자) 심사제외 가능
- 경영상태 심사
 -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등
-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과 균형단가를 90:10 ~ 100:0의 범위에서 가중평균하여 산정
 - －세부공종 기준단가의 $\pm 15\%$. 단, 고정비용 비중이 20% 이상인 공사는 $\pm 15\% \sim \pm 18\%$ 에서 설정
- 하도급계획 심사
 -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 심사
 - ※ 적격심사기준과 동일



② 안전관련 규정 개정

- 사회적책임분야 중 건설안전 심사

※ '20.7.1부터 시행

-(현행) 재해율+사망만인율 →(개정) 사고사망만인율*

*상시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

※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은 가중평균 산정시 종전의 '사망만인율' 활용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기간, PQ와 동일하게 변경

(현행) 입찰공고 전전년도 1년간 위반건수 →(개정) 최근 1년간 위반건수

- 시공계획 심사에 안전관리 역량평가제 도입

※ '20.3.18 시행

-시공계획 평가항목으로 안전관리역량* 항목 신설

*해당공사의 안전관리 · 점검계획, 안전관리 조직 운영 등 평가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 후 신인도 감점 폐지

※ '20.3.18 시행

-(현행) 6월 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을 경우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만큼(최장 2년) PQ 감점(-2점)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 폐지

- 신인도 항목* 임의 설정금지

※ '20.3.18 시행

-(현행) 발주기관 자율결정 →(개정) 신인도항목 변경시 기재부 협의

- 과도한 신인도 감점폭 조정

- ※ '20.3.18 시행

- 신인도 감점을 현행의 2/3 수준으로 조정

- 신인도 산업재해발생을 산정기준 개정

- ※ '20.7.1부터 시행

- (현행) 환산재해율 → (개정) 사고사망만인율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 PQ신인도 감점 도입

- ※ '20.3.18 시행

- 최근 1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 행정형벌 2회 이상 받은 자(해당 발주기관만 감점 적용)

- *2회 받은자 : -0.5점 / 3회 이상 받은자 : -1점

- ※ 시행일 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 받은 분부터 산정

3) 적격심사기준

■ 주요 개정내용

-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업체 가점 도입

- ※ '20.3.18 시행

- 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 신인도 감점 도입

- ※ '20.3.18시행

- 최근 1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 행정형벌 2회 이상 받은 자

- ※ 시행일 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 받은 분부터 산정



4)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주요 개정내용

- 선금 지급제한 규정 폐지
 - (현행) 잔여이행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선금지급 불가
 - (개정) 잔여이행기간 관계없이 선금 지급
-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의무 폐지
 - (현행) 계약상대자에 선금 전액 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 (개정) 제출의무 폐지
- 공기연장시 인력투입계획 관련협의 명문화
 - (현행) 공기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에 대해 필요시 발주기관은 조정 요구
 - (개정)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인력투입계획 조정
- 기술형입찰 수의계약 가격협상 기준 등 개선
 - 예비계약 체결시 발주기관 요청에 따른 추가설계분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가능 명시
 - 발주기관이 검토가격 작성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산출내역서를 조정 · 반영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 조정내역사유 고지 의무화
 - 최소협상가격이 예산을 초과하는 등 예산 내에서 가격협상 곤란하다 판단시 설계서 변경 등 통해 물량감축할 수 있도록 함

5) 공사계약일반조건

■ 주요 개정내용

• 착공 준비기간 신설

※ '20.3.18 시행

—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준비기간 부여

※ 10억 이상 공사 : 20일 / 10억 미만 : 10일

• 공사용지 확보 관련업무* 전가 금지 명문화

※ '20.3.18 시행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대응 등

• 공사의 일시정지시 통지절차 개선

※ '20.3.18 시행

— 공사의 일시정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확인요청 제도* 도입

*일시정지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 발주기관의 검토 회신

• 대가지급의 전자적 처리 근거 마련

— 발주기관의 공사, 노무용역의 대금지급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

• 월별 공정보고 절차 개선

※ '20.3.18 시행

— (현행) 서면 제출만 규정 → (개정) 전자시스템 통한 제출 가능

• '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의무면제

※ '20.3.18 시행

— 30일 미만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 및 '월별 공정보고' 면제

*현행 : 착공신고서 제출(착공시) 및 월별 공정보고 의무

• 해외에서 발생한 사유도 불가항력에 포함

※ '20.3.18 시행



-(현행) 국내 발생사유로 한정 → (개정) 해외 발생사유도 포함

6) 예정가격 작성기준

■ 주요 개정내용

- 법정부담금*을 예정가격에 계상하도록 명확화

※ '19.12.18 시행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지출의무가 부여된 비용

- '1식 단가' 이용요건 명확화

※ '19.12.18 시행

-세부내역별 단가를 분류하여 작성 어려운 경우에만 '1식 단가' 활용

7) 시행령개정('19.9.17)에 따른 예규 개정사항

■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완화

-심사서류 미제출자, 낙찰자 결정 전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삭제

- 공사계약 설계서 교부 의무화

※ '19.12.18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사유 변경

※ '19.12.18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현행)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받은 사실 있는 자

→ (개정)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사항

■ 주요 개정내용

- 산출내역서 제출방식 간소화

※ '20.3.18 시행

—(현행) 인감 또는 서명→(개정) 천공방식도 허용

- 공사 부분완료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명확화

—‘부분 목적물 인수일’과 ‘공고에 따른 관리·사용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한 날

※ 시행령 개정('13.12.30)에 따른 반영





〈참 고〉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100억원~300억원) 시행방안

평가항목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100억원~300억원 (신설, 간이형)
수 행 능 력 (40점)	시공실적	10년간 실적	완화 (발주기관이 실적기간 등 결정)
	배치기술자	6개월 미만 재직시 감점	6개월 재직요건 삭제 *최초의 종합심사 심사서류 제출 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일까지 재직 필요
		분야책임자 경력심사	심사 제외
	규모별 시공역량	대표자 등급보다 상위 등급업체는 참여시 감점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대표자 제외)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매출액 비중	○	심사 제외
	시공평가결과	○	심사 제외
	경영상태 평가	X	○ (신설)
가 격 (60점)	세부공종 단가심사 만점 범위	기준단가의 ±18%	기준단가의 ±15% (고정비용 비중 20% 이상인 공사는 ±15%~±18% 설정)
	세부공종 기준단가 산정 (세부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 균형단가)	7:3	9 : 1 ~ 10 : 0 * 발주기관별 구체적 심사기준 명시
	하도급계획 심사 완화(감점)	하도급계약 건별 적정성 심사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의 합계액 기준 심사 * 적격심사와 동일 기준 · 절차

「기타 사항」

가. 2019 달라지는 건설제도

- 국토교통부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 수급인 계약 이행 보증시 발주자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구 가능	•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시, 발주자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의무화 -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 곤란시, 수급인이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 지급의무 부여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제99조 (’20.11.27. 시행)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	• 건설업자	• ‘건설사업자’ 용어 순화	건설산업기본법 (’19.11.1. 시행)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 설〉	•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시공능력평가 등을 우대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 (’19.12.19. 시행)
건설업자 하도급 참여 제한제	〈신 설〉	•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2년 이내) *건설법 하도급 제한규정(제29 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출입국 관리법,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19.12.19. 시행) ※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3년 유예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시공능력평가 가·감 항목 신설	〈신 설〉	- 직접시공 의무대상 이외의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직접시공 금액의 10% 가산 - 퇴직공제 5년이상 가입 및 500일이상 납부한 근로자가 법인 설립시 기술자 가중치를 현행 2배 적용(최초연도, 익년 총2회)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의 4배초과 제한 - 공정거래법 제24조의2제 2항 위반(부당 내부거래)으로 과징금 처분시 최근 3년 공사 실적 평균의 5% 감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19.3.26. 시행, '20년도 정기 시평부터 반영)
상호협력 평가기준 변경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시 모든 협력업자의 참여 실적을 반영	‘협력업자 공동도급 참여율’ 평가시 공사현장 지역 소재 협력업자의 참여 실적만 반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 ('19.3.26. 시행, '20년도 정기 시평부터 반영)
	‘하도급대금 현금성 결제비율’(8점)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5점)을 각각 평가	‘하도급대금 현금성 조기 지급’(8점)으로 통합하여 평가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을 가점으로 반영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을 배점(5점) 항목으로 변경	
건설공사 부실벌점 측정·부과 대상 확대	총공사비 50억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공사)	전체공사로 확대 ※ '19.7.1.부터 부과된 벌점은 '20.3.1.부터 공표되어 입찰 등 적용될 예정	건설기술진흥법 제87조제1항 ('19.7.1.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건설사고 발생시, 보고체계 및 보고시한 등	• 사고발생시, 발주자는 건설공사 참여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해야 함 • 보고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 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 시스템 활용 가능	• 사고 발생시, 건설공사 참여자가 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2시간 이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장에 보고 •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망(www.csi.go.kr)의 사고신고시스템과 전화·팩스를 활용하여 제출	건설공사 안전 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6조 및 제59조 ('19.12.16. 시행)
표준시장단가 개정횟수 변경 등	• 표준시장단가 연 2회 개정 -물가보정 : 1.1, 7.1	• 연 1회 조사개정 및 연 2회 물가보정 ※ 조사개정 : 1.1 - 물가보정 : 1.1, 5.1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 ('20.1.1 시행)
착공신고시 제출 서류 확대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실내재료 마감표 -평면도 (방화구획 및 방화벽 위치 등) -입면도 (외부마감재료) -단면도	• 착공신고시 건축물의 화재 안전 여부를 검토 가능한 서류 제출 -마감재료표 (외벽마감재료 포함) -평면도(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입면도(외벽마감재료) -단면도(방화구획 계획 추가) -방화구획상세도,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 상세도 추가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 ('20.5.19 시행)



• 기획재정부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적정공사비 반영	〈신 설〉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 제외 *(재료비+노무비+경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부가세}	국가계약법 제10조③ 신설 ('20.5.27 시행)
부당특약 금지 및 효력 무효화	〈신 설〉	-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 설정금지 - 부당특약 설정시 효력 무효	국가계약법 제5조③ 및 ④ 신설 ('20.5.27 시행)
이의신청 대상 확대	이의신청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등	부당한 특약 등에 관한 사항 추가	국가계약법제 28조①제1의 2호 신설 ('20.5.27 시행)
100억~300억 공사 간이형 중심제 시행	100억~300억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 기준 적용	- 동 규모 공사에 간이형 중심제 적용 -시공실적,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경영상태, 가격산출의 적정성, 하도급계획, 사회적 책임분야 등 심사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 심사낙찰제 심사기준」 ('19.12.18 시행)
중심제 건설 안전 신인도 기준 개선	재해율+사망만인율	- 중심제 및 간이형 중심제의 건설안전 심사시 사고사망 만인율*만 반영 -환산재해율을 대체하여 사고사망만인율이 도입됨에 따라 평가기준 개선 *상시근로자 1만명 당 산업재해 로 인한 사고사망자 비율 평가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 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4]1. ('20.7.1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시공계획 심사시 안전관리 역량평가제 도입	〈신 설〉	• 중심제(고난이도 공사)의 시공계획 평가항목에 안전관리역량 항목을 신설 - 해당공사의 안전관리 · 점검계획, 안전관리 조직 운영 등 평가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 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2]2.마.3) ('20.3.18 시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만료 후 PQ 신인도 감점 폐지	• 6개월 이상 입찰 참가자격제한시 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만큼 PQ 신인도 감점(-2점)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감점기준 폐지	국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2]5.가. 및 [별표3]5.가. ('20.3.18 시행)
PQ 신인도 항목 임의설정 금지	• 신인도 평가항목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신인도 평가항목 추가 · 제외시 기재부 협의	국가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7조③단서 신설 ('20.3.18 시행)
적격심사기준 가 · 감점 평가항목 도입	〈신 설〉	• 산업재해예방활동 우수 업체 가점 도입 - 최근 1년 동안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습위반업체 신인도 감점 도입 - 최근 1년 동안 산안법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 이상 행정형벌 2회 이상 받은 자(해당 발주 기관만 감점 적용) ※시행일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형벌을 부과받은 분부터 산정	국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③제5호 ('20.3.18 시행)
선금 지급 제한 규정 폐지	• 잔여이행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선금지급 불가	• 잔여이행기간 관계없이 선금 지급	국가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4조⑩삭제 ('19.12.18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선금사용 내역서 제출 의무 폐지	• 계약상대자에 선금 전액 사용시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의무	• 제출의무 폐지	국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6조②삭제 ('19.12.18 시행)
공기연장시 인력투입 계획 관련 협의 명문화	• 공기연장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력 투입 계획에 대해 필요시 발주기관은 조정 요구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인력투입계획 조정	국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② ('19.12.18 시행)
착공 준비 기간 신설	〈신 설〉	• 계약체결 후 최소 착공 준비기간 부여 -10억 이상 공사:20일 -10억 미만:10일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7조 ②신설 ('20.3.18 시행)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 전가 금지 명문화	〈신 설〉	•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 금지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1조 ③신설 ('20.3.18 시행)
공사의 일시 정지시 통지 절차 마련	〈신 설〉	• 공사의 일시정지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확인요청 제도 도입 -일시정지 통지가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일시 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 → 발주기관의 검토 회신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47조③ 신설 ('20.3.18 시행)
불가항력 인정사유 확대	• 국내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사유만 인정	• 해외 발생사유 인정	국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32조 ('20.3.18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완화	• 계약의 부실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 아래 사유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 - 적격 · 종심제 낙찰자 선정 심사 관련, 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 포기자 - 일괄입찰 실시 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등 - 입찰/산출내역서 금액 불일치 등 기재부령이 정하는 입찰무효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① (‘19.9.17 시행)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 적용 - 300인 이상 사업장만	• 주 52시간 적용 - 50인 이상 사업장 : ’20.1.1 - 5인 이상 사업장 : ’21.7.1	근로기준법 ’20.1.1 시행
관공서 공휴일 적용	〈신 설〉	•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의무적용 (휴일수당 지급) - 300인 이상 기업: 2020.1.1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1.1.1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2022.1.1.부터	근로기준법 ’20.1.1 시행
최저 임금액	• 시간급 8,350원	• 시간급 8,590원	최저임금 고시
건강 보험요율	• 6.46%	• 6.6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장기요양 보험료율	• 8.51%	• 10.25%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4조
건설업 고용 보험료율	• 실업급여 -: 0.65%	• 실업급여 -: 0.8%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적용시기: '19.10.1
건설업 산재 보험료율	• 37.5/1,000	• 37.3/1,000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산업안전 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 확대	• 도급인의 책임 범위: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장소 및 산재발생 위험 22개 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 지배 · 관리 · 제공 · 지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0.1.16 시행)
자격 · 면허 필요 작업에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추가	〈신 설〉	• 자격 · 면허 · 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에 이동식 크레인 ·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추가	유해 · 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 ('20.2.1 시행)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확대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 : 120억원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 및 50억원 이상 공사 중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100억원 이상 : '20. 7. 1부터 적용 -80억원 이상 : '21. 7. 1부터 적용 -60억원 이상 : '22. 7. 1부터 적용 -50억원 이상 : '23. 7. 1부터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부칙 제2조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신 설〉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0위 이내 기업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승인 받도록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20.1.16 시행)
산업안전 보건법상 기계· 기구에 대한 도급인의 조치 의무 신설	〈신 설〉	• 타워크레인, 향타·향발기, 건설용리프트에 대해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6조 ('20.1.16 시행)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확대	• 총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 공사	• 총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제3조 ('20.7.1시행) ※ '20.7.10이후 새로이 계약 체결하는 건설 공사부터 적용

• 공정거래위원회소관사항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요건 확대	•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조정 신청 요건 신설 -(신설)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신설)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20.5.27 시행)



제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발주자의 수급사업자 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 지급지체 입증 서류를 첨부, 직접지급 중지 요청 ⇒발주자 재량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 지급지체 입증 서류를 첨부, 직접지급 중지 요청 시 ⇒발주자 의무적 지급 중단 ※ 위반시 과징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9.11.1 시행)

■ 2019 대표회원 추계 워크숍

- 일 시 : 2019. 11. 18(월), 11:00 ~ 21:00
- 장 소 : 이스트밸리 C.C
- 참 석 자 : 우리사회 대표회원 등 45인
- 내 용 : 그린미팅, 간담회

■ 동대문구청 “사랑나눔 이웃돕기” 성금 전달

- 일 시 : 2019. 12. 27(금), 11:00
- 장 소 : 동대문구청 부구청장실
- 참 석 자 : 허송 회장 등 시회장단
- 내 용 : 성금 1,000만원 전달

「2019년 10 · 11 · 12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41	623	817	378	1,818

●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인서	공정관리 조 직	10년간 동일 공종 실적	계
139	145	164	11	7	157	623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부정 당	산재 예방	계
83	3	71	73	70	73	2	119	4	132	98	89	817

다. 기타서류

(단위: 건)

개별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자기	총괄표	소계						
281	5	14	300	0	0	0	78	0	352



「건설업체 현황」

●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9.12.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8,713	2,938	1,964	3,491	33	287	10,738	2,938	1,965	4,151	354	1,330
비회원	4,337	172	634	3,399	33	99	4,495	172	634	3,513	44	132
계	13,050	3,110	2,598	6,890	66	386	15,233	3,110	2,599	7,664	398	1,462

●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9.12.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1,347	225	68	996	11	47	1,511	225	68	1,019	63	136
비회원	550	19	14	482	11	24	561	19	14	484	16	28
계	1,897	244	82	1,478	22	71	2,072	244	82	1,503	79	164

●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신고일자)
1	건축	102795	(주)도시엔씨종합건설	고영철 정애정	경기	2019-09-02(2019-10-01)
2	건축	050626	나린종합개발(주)	서영호 오광수	인천	2019-09-20(2019-10-10)

3	건축	080016	디앤엘종합건설(주)	민철기	세종	2019-08-08(2019-10-15)
4	건축	040943	(주)새재종합건설	김종한	인천	2019-09-23(2019-10-17)
5	건축	040864	(주)옵니자산관리	강동원	인천	2019-10-02(2019-10-21)
6	건축	040875	(주)에이치엠지파트너스	이상욱	인천	2019-10-02(2019-10-25)
7	건축	020992	명성물산(주)	이복덕	부산	2019-10-17(2019-11-07)
8	조경	160164	건영종합조경(주)	이현주	대전	2019-11-08(2019-11-13)
9	건축	103374	(주)베스트종합건설	최용길	경기	2019-10-04(2019-11-14)
10	건축	050914	(주)드림하우스종합건설	임복순 윤정현	광주	2019-10-17(2019-11-14)
11	건축	021570	(주)이주종합건설	전재명	부산	2019-11-08(2019-11-15)
12	건축	014308	(주)우정종합건설	조형철	인천	2019-11-08(2019-11-15)
13	건축	021391	성안산업개발(주)	김진구	경기	2019-11-01(2019-11-18)
14	건축	170630	(주)가로건설	김규효	경남	2019-11-12(2019-11-26)
15	건축	120434	(주)펜테리움개발	곽희진	충북	2019-11-01(2019-12-02)
16	건축	120460	(주)센테리움이앤씨	강명신	충북	2019-11-01(2019-12-02)
17	건축	120459	(주)펜테리움건설	구본승	충북	2019-11-01(2019-12-02)
18	건축	1229	태혁종합건설(주)	김관진	제주	2019-11-12(2019-12-05)
19	건축	021576	(주)이투릭스종합건설	박규리	부산	2019-12-09(2019-12-13)

● 전출현황

연번	업종	등록번호	회사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신고일자)
1	건축	014524	(주)유진종합건설	이세희 권우성	경기	2019-09-26(2019-10-01)
2	건축	014481	(주)제이에스엘종합건설	송준호	인천	2019-09-04(2019-10-02)



3	건축	014532	(주)신우종합건설	정복순	경기	2019-09-27(2019-10-04)
4	건축	011693	(주)진평종합건설	문현성	경남	2019-10-02(2019-10-11)
5	건축	014214	제이아이종합건설(주)	전명현	인천	2019-10-08(2019-10-14)
6	건축	014493	빌드산업개발(주)	김봉옥	경기	2019-09-18(2019-10-14)
7	건축	014516	(주)진미종합건설	진종덕	경기	2019-09-27(2019-10-15)
8	건축	105453	선이인터내셔널(주)	장우혁	경기	2019-09-19(2019-10-16)
9	건축	014523	(주)나은종합건설	안명수	경기	2019-10-08(2019-10-18)
10	건축	014190	(주)미래지씨앤씨	정현수	경기	2019-10-01(2019-10-25)
11	건축	013394	티엔이엔씨(주)	박현우 최종수	경기	2019-10-18(2019-10-31)
12	건축	010639	앤에스건설산업(주)	박종원	경기	2019-10-07(2019-10-31)
13	건축	014536	(주)로건종합건설	김희남	경기	2019-10-30(2019-11-04)
14	건축	013784	선원도시건설(주)	송영술	경기	2019-09-23(2019-11-13)
15	건축	013683	(주)주아종합건설	이학수	인천	2019-11-04(2019-11-14)
16	건축	010866	에스씨건설(주)	김재윤	경기	2019-11-05(2019-11-19)
17	건축	014551	(주)청산종합건설	박연풍	경기	2019-11-14(2019-11-19)
18	건축	050813	(주)동화건설산업	양송이	광주	2019-11-07(2019-11-21)
19	건축	014539	(주)오케이종합건설	오영식	경기	2019-11-20(2019-11-25)
20	건축	014535	(주)아이비건설	고정란	경기	2019-11-26(2019-12-02)
21	건축	014548	(주)명보종합건설	염민자	경기	2019-12-03(2019-12-09)
22	토목	160663	(주)명주산업	박철원	광원	2019-11-29(2019-12-10)
23	건축	013802	(주)이노션건설	김성준	경기	2019-12-02(2019-12-17)
24	건축	014555	비에스건설(주)	이복희	경남	2019-12-18(2019-12-24)

■ 건설업 연말결산 및 실질자본금 교육 개최

- 일 시 : 2019. 10. 25.(금), 15:00~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참 석 : 173명
- 내 용 : 건설업 연말결산 및 실질자본금 교육



■ 2019년도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 평가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12. 19.(목), 15:00~17: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참 석 : 457명
- 주요내용
 - 1.2차 실적신고 요령 설명
 -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설명 등



종합건설업 기재사항(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시 구비서류

공 통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법인 또는 사용인감 도장
상호, 명칭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지자체 신원조회 활용)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단 작성(별지) - 대표자 주민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 변경된 대표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등록기준지 명시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영업 소재지 (전입지에서 신고)	법 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말소사항 포함)
	개 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사무실위치도, 사무실평면도(면적표시) 및 사무실 내 · 외부사진
	자기소유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 전,월세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재임대차 (전대)	건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재임대계약서, 건물주의 재임대동의서(인감날인), 건물주인감증명서, 임차보증금온라인입금확인증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 인	법인등록번호 변경 증명서류
	개 인	주민등록증번호 변경 증명서류
국적 또는 소속국가 변경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재사항 변경신고는 **변경 연월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30일 경과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AK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주 소	회원가입 일자
건축	014540	(주)디에이에프	국윤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21가길 21, 2층(회기동)	10/1/19
건축	014544	(주)지에이치건설산업	전병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7, 8층 6호(방배동,성령빌딩)	10/10/19
건축	014545	(주)신현이엔지	성신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26, 2층(양평동1가)	10/10/19
건축	014543	화성엔지니어링(주)	류성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1길 14, 2층, 3층(서초동,상원주택)	10/10/19
건축	014347	(주)거마종합건설	차정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에이스타워마곡 1109호(마곡동)	10/10/19
건축	014546	(주)태인종합건설	김홍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9길 14, 401호(응암동,동호빌딩)	10/11/19
산업환경	010125	(주)지엔씨에너지	안병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43(양평동3가,우림이비지센터)	10/22/19
건축	014525	(주)재원엔건설	김경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9길 11, 2층(당산동3가)	10/29/19
건축	040864	(주)옴니자산관리	강동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연주로130길 35, 7층(논현동, 동양애니메이션빌딩)	11/4/19
건축	014527	도림건설(주)	김병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41, 3층(도림동)	11/4/19
건축	014550	(주)시엘에스이엔지	임철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20(역삼동,성보역삼빌딩)	11/6/19
건축	021570	(주)이주종합건설	전재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2길 33, 301호(서초동, 현대오피스텔)	11/25/19
건축	014556	(주)바른지음	김남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8길 10, 703-2호(성수동2가,에이스성수타워1)	11/26/19
건축	021336	(주)청림종합건설	유근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7층(여의도동, 아이비피아빌딩)	11/27/19
건축	105441	씨지건설(주)	김일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96, 3층(화곡동,강서아이파크)	12/2/19
건축	014361	(주)선유건설	김형창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가길 18, 9층 907호(구로동, 에이치케이타워)	12/2/19
건축	014542	(주)이세종합건설	정순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성로 66, 3층(공납동, 재복빌딩)	12/2/19
건축	014557	(주)씨앤디개발	문노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고개로1길 10, 414호(수서동)	12/4/19
건축	014559	(주)신한에스엔지	최용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2동 7층 4호-5호(문래동3가,에이스하이테크시티)	12/6/19
건축	102627	(주)케이엔종합건설	김규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 10층 1003호(가산동, 더루벤스밸리)	12/9/19
건축	014563	다솜종합건설(주)	한동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흥대로 526, 304호(신림동,백우빌딩)	12/17/19
건축	014564	아세아건설(주)	김은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4, 105-2호(자곡동,아세아아이씨티센터)	12/17/19
건축	014566	(주)태천종합건축	김석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85길 14, 6층(성내동)	12/18/19
건축	014565	(주)그리니건설	강용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303-2호(대치동)	12/20/19

